第158回國會
(閉 會 中)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2年9月9日(水)
場 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動力資源委員會)

議事日程

1. 3個法등改正審議班審議結果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3個法등改正審議班審議結果報告의件 ····· 1面

(10時29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安秉玉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

1. 3個法등改正審議班審議結果報告의件

(10時31分)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3個法등改正審議班審議結果報告의件을 上程합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지난 9月3日 3黨 幹事間의 합의에 따라 3個法등改正審議班審議結果를 報告하기로 하여 議事日程으로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各 審議班別로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을 대표하여 丁時采委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時采委員 丁時采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의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은 92年8月18日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民自黨의 申相式委員 그리고 本委員 그리고 康容植委員, 民主黨의 金琫鎬委員, 洪思德委員 國民黨의 尹榮卓委員, 國民黨의 尹榮卓委員은 9月7日 金鎭榮委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상 6人으로 구성되어 同日부터 '92年9月8日까지 總 12次에 걸친 진지한 審議를 하였는 바 그 審議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 問題에 대하여 各黨의 意見을 말씀드리면 民自黨은 '95年6月30日 이내에 基礎議會와 團體長選擧 및 廣域議會와 團體長選擧를 각각 동시에 실시하되 그 이전이라도 여건이 조성되면 次期大統領 當選者가 實施時期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으며 民主黨은 基礎 및 廣域自治團體長選擧는 年內實施가 원칙이되 廣域自治團體長選擧는 늦어도 大統領選擧와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基礎自治團體長選擧는 93年 上半期中에 실시하자는 입장이었고 國民黨은 基礎 및 廣域自治團體長選擧는 年內實施가 원칙이되 基礎自治團體長選擧는 늦어도 今年 10月末까지 실시하여야 하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大統領選擧와 동시에 실시하고 廣域自治團體長選擧는 93年 上半期中에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같이 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問題에 대하여는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自治團體의 長選擧 實施時期問題와 관련하여 民主黨과 國民黨側은 與·野 同數로 敎授 또는 專門家 등을 초빙하여 이에 관한 公聽會 또는 TV討論會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民自黨側에서는 이미 公聽會와 TV討論會 등을 수차 실시한 바 있고 與·野 同數의 초빙에 의한 개최는 서로간의 입장 확인에만 그칠 뿐이므로 當 審議班에서 진지하게 審議해 본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자고 하는 이러한 意見이었습니다.

둘째 그외의 地方自治法改正에 관한 審議事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民自 民主 國民黨 등 各黨이 제출한 地方自治法改正案과 全國 市·道議會議長協議會에서 제출한 地方自治法改正에 관한 建議內容 등을 중심으로 審議하였으며 審議結果 5個項에 대하여서는 합의하였으나 國政監査權의 地方自治團體에로의 委任問題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합의된 5個事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市·道의 條例로서 3月이하의 懲役 또는 禁固등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現行 地方自治法第20條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 職務로 인하여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總選後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選擧日부터 25日以內에 소집하도록 하던 것을 地方議會議員 임기개시일부터 25日以內에 召集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의 要件을 완화하고 先決處分이 地方議會에 報告되어 承認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상실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案 提出時期를 會計年度開始 市·道 40日前, 市·郡·自治區는 35日前에서 각각 50日, 40日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未合意된 主要事項을 말씀드리면 國政監査權의 地方議會에의 이양 문제, 地方議會의 行政事務監査期間을 3日 또는 5日以內에서 10日以內로 연장하되 이를 法律에 명문화하는 문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內務部長官 등 上級機關의 監査權의 廢止問題 內務部長官 및 市·道知事 소속하에 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를 설치하는 등 上級機關의 紛爭調整機能을 강화하는 문제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에서 심의한 사항을 간략하나마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審議結果報告書

目 次

1. 審議經緯
2. 合意事項
3. 未合意事項

1. 審議經緯

○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은 '92年8月18日 第2次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申相式委員, 丁時采委員, 康容植委員(이상 民主自由黨), 金琫鎬委員, 洪思德委員(이상 民主黨), 尹榮卓委員('92.9.7 金鎭萬委員으로 交替, 統一國民黨)등 6人으로 構成되어 同日부터 '92年9月8日까지 總 12次에 걸친 진지한 審議를 하였는바 그 審議經緯는 다음과 같음.

가.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

·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問題와 關聯하여 각 政黨의 立場은 다음과 같이 제기되어 論議되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에 관한 各黨의 意見

區 分	民 自 黨	民 主 黨	國 民 黨
實施順序	○95年6月30日 이내에 基礎議會와 團體長選擧 및 廣域議會와 團體長選擧를 各各 동시에 實施	○廣域自治團體長選擧의 우선 實施 ○基礎自治團體長選擧의 우선 實施案도 수용가능	○基礎自治團體長 選擧의 우선 實施
實施時期	○95年度 上半期이내에 基礎 및 廣域自治團體選擧의 實施 ○次期大統領選擧者가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實施時期에 있어 신축운영가능	○基礎 및 廣域自治團體長選擧의 年內實施가 원칙 ○廣域自治團體長選擧는 늦어도 大統領選擧와 동시에 實施 ○基礎自治團體長選擧는 93年 上半期중에 實施	○基礎 및 廣域自治團體長選擧의 年內實施가 원칙 ○基礎自治團體長選擧는 늦어도 10月末까지 實施.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大統領選擧와 동시에 實施 ○廣域自治團體長選擧는 93年 上半期중에 實施

· 公聽會 또는 TV討論會 開催問題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 問題와 關聯하여 民主黨·國民黨側은 與·野 同數로 敎授, 專門家 등을 초빙하여 이에 관한 公聽會 또는 TV討論會를 開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民自黨側은 이미 公聽會·TV討論會 등을 수차 한 바 있고 與·野 同數의 초빙에 의한 開催는 서로간의 立場確認에만 그칠 뿐이므로 당 審議班에서 진지하게 審議해 본 후에 必要하다고 판단될 때 檢討하자고 하였음.

나.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 이외의 審議事項

·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實施時期 이외의 問題에 대하여는 政府가 國會에 提出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民自黨은 同改正法律案을 民自黨案으로 當 審議班에 提出하였음), 民主黨 및 國民黨이 當 審議班에 提出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그리고 全國市·道議會議長協議會에서 提出한 地方自治法改正에 관한 建議內容 등을 중심으로 審議하였음.

· 審議結果 5個項에 대하여는 合意하였으나 國家의 機關委任事務에 대한 國會國政監査權의 地方自治團體에의 委任問題 등 其他事項에 대하여서는 合意하지 못하였음.

1. 合意事項(5個項)

○市·道의 條例로서 3月 이하의 懲役 또는 禁固 등의 罰則을 정할 수 있도록 한 現行地方自治法 第20條를 削除함.

○地方議會議員이 會期중 職務로 인하여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함.

○總選擧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選擧日부터 25日이내에 召集하도록 하던 것을 地方議會議員 임기개시일부터 25日이내에 召集하도록 함.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의 要件을 완화하고 先決處分이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상실하도록 함.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案 提出時期를 會計年度개시 市·道 40日前, 市·郡·區 35日前에서 각각 50日前, 40日前으로 變更함.

3. 未合意事項

○國家의 機關委任業務에 대한 國會國政監査權의 地方自治團體 委任 및 그 方法問題

○地方議會의 行政事務 監査期間의 연장 및 監査期間을 法에 명문화하는 問題(民主·國民黨側은 地方議會의 行政事務

監査期間을 現行 3日 또는 5日이내에서 10日이내로 연장하되 法律에 規定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民自黨側은 現行대로 施行令에 두되 1~2日정도 연장하도록 政府側에 촉구할 것을 주장하였음)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條例案 公布期限을 15日에서 20日로 연장하는 問題(民自黨側 주장)

○地方議會의 年間 總會議日數를 市·道 100日, 市·郡·區 60日에서 각각 120日, 100日로 연장하는 問題(民主黨側 주장)

○地方議會 事務職員의 任命權者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서 地方議會議長으로 하는 問題(民主·國民黨側 주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內務部長官 등 上級機關 監査權의 廢止問題(民主·國民黨側은 自治團體에 대한 內務部長官 등 上級機關의 監査權을 廢止하고 書類提出要求로 改正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民自黨側은 地方自治制가 성숙될 때까지 行政指導를 위하여 현행대로 둘 것을 주장하였음)

○內務部長官 및 市·道知事 소속하에 地方自治團體 紛爭調整委員會를 設置하는 등 上級機關의 紛爭調整機能을 強化하는 問題(民自黨側 주장) 등

.....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을 代表하여 朴相千委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朴相千委員입니다.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 審議結果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油印物을 配布해 드린대로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점만 가려서 가급적 간단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審議班은 未合意事項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政局의 正常化를 위해서 긴요하다는 인식아래 가급적 많은 事項을 合意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9個項의 未合意事項이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審議班은 今年 8月18日부터 18回에 걸쳐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협상을 하였습니다.

民主自由黨所屬 李仁濟委員 崔在旭委員 黃潤錤委員과 民主黨所屬 趙舜衡委員 그리고 本委員 統一國民黨所屬 邊精一委員 등이 심도있는 討論을 거쳐서 合意한 내용부터 먼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合意事項은 約 110個項에 이르는데 이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公明選擧保障裝置를 강화하기 위해서 不在者投票制度에 대하여 획기적인 改善을 했으며 不在者申告人의 대상을 확대하고 原則的으로 不在者申告人은 選擧管理委員會가 설치한 不在者投票所에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의 管理와 政黨推薦參觀人의 참석하에 投票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郵遞局長에게 引繼하여 郵便·發送하도록 했으며 그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는 不在者投票期間을 10日로 해서 충분히 投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가 없는 不在者申告人에 대해서는 例外的으로 所屬機關·施設의 長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許可를 얻어서 그 機關이나 施設內에 小規模 不在者投票所를 설치해서 거기서 投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며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隔·奧地에 근무하는 軍人과 같은 不在者投票所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居所投票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不在者投票가 郵送도중에 事故가 날 것을 豫防하기 위해서 不在者投票의 回送用外封套의 모든 封緘部分에 圖章을 찍어서 이것을 뜯어볼 수 없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開票參觀人이 投票所에 送付된 投票函의 引受 引繼節次를 參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投票函이 바뀌어졌느니 어쩌느니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開票는 區·市·郡 選擧管理委員長이 投票區 單位로 행하되 投票區別 集計票에 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그 投票區別 集計票에는 거기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 全員이 署名·捺印하도록 이렇게 해서 開票의 착오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또 開票參觀人은 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이 지정하는 開票所나 또는 閱覽席의 특정장소에서 電話·컴퓨터 기타 通信施設을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通報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두어서 各 政黨이 또 候補者가 開票狀況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選擧運動方法을 확대했는데 우선 各 候補者가 70페이지에 이르는 政見·政策集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小型油印物制度를 도입해 가지고 16절지 크기의 20面이내의 세 종류 8절지크기 2페이지짜리 한 종류 이것을 選擧期間중에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2페이지짜리 油印物 한 種은 不在者申告人에게 不在者投票用紙를 우송할 때 거기에 집어 넣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大統領選擧에는 選擧公報가 없다는 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政見·政策에 관한 新聞廣告의 回數를 현재 各 日刊新聞社別로 3回로 되어 있는 것을 4回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放送施設을 이용한 대담, 토론시간을 현재 40分에서 2時間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을 했고 그 진행절차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選擧의 타락,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選擧期間을 현재의 30日에서 28日로 단축을 했습니다. 演說會의 回數를 現行法에는 總 3,662回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候補者演說會와 演說員演說會를 합쳐서 開票區마다 5回이내로 축소를 했습니다.

즉 1,540回까지 開催할 수 있도록 절반이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寄附行爲制限規定을 강화해서 大統領 任期滿了日 180日 前부터는 지난 번 國會議員選擧 당시와 똑같은 엄격한 寄附行爲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選擧運動員에 대한 手當制度를 폐지하고 實費補償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세칭 選擧몰이꾼에 대해서 加重處罰規定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選擧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람이 自首한 때에는 그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서 金品選擧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습니다. 또 選擧演說會場에서 照明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과열된 행동이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選擧公營制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演說中에서 현재 國庫負擔이 1回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候補者 3回 演說員 2回로 확대했습니다.

또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強化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選擧管理委員會는 違法宣傳物을 발견했을 때에는 中止, 撤去, 收去 閉鎖 등을 命令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不應하는 경우에는 行政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措置를 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이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法上의 虛僞事實公表罪 또는 姓名등 虛僞表示罪에 해당하는 違法宣傳物이 郵送中에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郵遞局長에 대해서 郵送을 中止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選擧管理委員會는 捜査機關에 調査·依賴 또는 告發을 하도록 하였고 그 捜査機關이 刑事訴訟法 第207條의 時間內에 다시 말하면 法院이 있는 곳에서는 48時間내에 法院이 없는 곳에서는 72時間내에 押收令狀을 發付받지 못하면 郵送中止를 解除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郵送해 주도록 이렇게 하여서 人權과 違法宣傳物의 郵送中止를 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國會議員選擧法에서 채택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未合意事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未合意事項이 9個項이 남아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公務員과 統·里·班長 그리고 官邊團體의 選擧介入을 차단하기 위한 民主黨과 國民黨의 提案에 대해서 民自黨이 의견을 달리해서 合意를 못보았습니다.

그 具體的 내용은 첫째가 統·里·班長과 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이런 분들이 選擧運動員으로 신고가 되려면 미리 그 職에서 解任되어야 되고 또 한번 解任되어

서 選擧運動員이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復職을 못하도록 하는 方案을 우리 野黨이 提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選擧運動員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家族 이를테면 그 妻가 대신 統·班長이 되는 것을 막는 이런 장치를 提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意見一致를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現行法에 公務員이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行爲를 處罰을 하고 있습니다.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行爲는 정상적 業務이외에 選擧期間중에 出張을 하는 行爲 이것 하나만 지금 規定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확대해서 우선 主體를 확대해 가지고 公務員 뿐만 아니라 統·里·班長 또 鄕土豫備軍小隊長 또 官邊團體의 任職員 이런 사람들은 몇가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行爲 이를테면 特定 政黨의 選擧企劃에 參考하거나 또 特定 政黨의 支持度를 조사를 해 주거나 이런 일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등등의 制限措置를 提案했습니다마는 與黨이 반대를 해서 지금 未決狀態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選擧權者의 年齡引下問題에 合意를 보지 못했습니다. 民自黨은 現行대로 20歲를 하자는 것이고 民主黨과 國民黨은 18歲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包括的 制限規定을 削除하는 문제에 合意를 못보았습니다.

그리고 放送廣告를 新設하는 문제에 대해서 合意를 못 보았습니다. 지금 歐美各國에서 하고 있는 대로 TV에 30秒짜리 選擧廣告를 政策政見에 대한 廣告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野黨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與黨의 주장이 맞서서 未妥結 事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投票用紙에 지금 第1黨과 第2黨만 加印하게 되어 있는 것을 第3黨까지 加印하도록 하는 문제에 合意를 못보았습니다.

그리고 不在者投票函의 開票方法에 있어서 國會議員選擧와 같이 不在者投票函을 먼저 分離開票할 것인가 現行法과 같이 混合開票를 할 것인가 一般投票函에 섞어서 開票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合意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選擧事犯에 대해서 檢事가 재판에 붙이지 않는 不起訴決定을 할 경우에 高等法院에 그 當否를 심사할 수 있도록 裁定申請制度를 도입하자는 野黨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與黨의 주장이 맞서서 合意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9個項에 대해서 合意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選擧管理委員會法도 審議를 했습니다.

合意事項중에 중요한 것은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은 選擧法違反行爲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것을 中止시킬 수가 있고 警告·是正命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明文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處의 補助機關중에서 公報官制度를 폐지하고 대신 弘報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職級은 現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높은 職級의 選擧管理公務員이 新設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 그 事務處所屬 公務員을 직접 採用·充員할 수 있도록 하되 그 試驗의 一部나 全部를 總務處에 委任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選擧管理委員會法中에 合意가 안된 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에게 選擧法違反行爲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犯罪現場에 출입하거나 犯罪現場에 가서 質問을 하거나 犯罪事實을 確認하거나 또 犯法事實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제 또 證據物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任意提出받도록… 압수하는 것은 法官의 押收令狀이 없으면 안되도록 憲法에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任意提出을 本人의 승락을 얻어서 提出받도록 하는 權限을 부여하자는 野黨의 主張 또 選管委의 主張과 또 與黨의 主張이 對立이 되어서 妥結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選擧管理委員會에 派遣 또는 委囑되어 勤務하는 他機關 所屬 公務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法令에 違反되는 行爲를 하거나 勤務를 태만히 할 경우에 所屬 機關의 長에게 懲戒를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合意를 보지 못

했습니다.

또 選擧管理委員會 所屬 公務員에 대해서 豫算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規定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合意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報告를 마치고 그 동안 수고해 주신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 委員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

審 議 結 果 報 告

目 次

Ⅰ. 審議經緯
Ⅱ. 大統領選擧法 改正審議內容
1. 合意事項
2. 未合意事項
Ⅲ. 選擧管理委員會法 改正審議內容
1. 合意事項
2. 未合意事項

Ⅰ. 審議經緯

1. 1992年8月18日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2次 委員會는 大統領選擧法 등 改正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을 구성하고, 民主自由黨所屬 李仁濟委員·崔在旭委員·黃潤錤委員, 民主黨所屬 趙舜衡委員·朴相千委員과 統一國民黨所屬 邊精一委員등 6人을 委員으로 選任함.

2. 同 審議班은 1992年8月18日부터 同年9月8日까지 18次에 걸쳐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 內務部關係者를 出席시킨 가운데 大統領選擧法 및 選擧管理委員會法을 각각 審議하였음.

3. 同 審議班은 1992年6月22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會에 提出하여 當 特別委員會에 回附된 大統領選擧法改正意見을 참고로 하고 各 委員이 제시한 各黨의 意見을 중심으로 深度있는 討論을 거쳐 合意點의 도출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 그리고 合意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3回에 걸친 再審議過程을 통해 가급적 未合意事項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음.

合意方式은 幹事間에 協議한 바에 따라 滿場一致制로 運營하였음.

4. 審議班의 審議結果, 大統領選擧法은 改正(新設·削除 포함)하기로 合意한 事項이 110件, 意見不一致로 未合意된 事項이 9件이며, 選擧管理委員會法은 改正하기로 合意한 事項이 8件, 意見不一致로 未合意된 事項이 4件으로써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음.

Ⅱ. 大統領選擧法 改正審議內容

1. 合意事項

◎大統領選擧法 改正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음.

첫째, 選擧의 公正性을 높이고 公明選擧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그간 問題가 되어왔던 不在者投票制度를 대폭 補完·改善하였고 選擧人名簿作成過程과 投·開票過程 등에서 公正性 保障裝置를 強化하였음.

둘째, 自由로운 選擧運動을 保障하고 選擧運動을 통한 候補者間의 競爭을 政見·政策對決로 誘導하기 위하여, 放送·新聞등 大衆媒體를 活用할 機會를 擴大하며 候補者가 政見·政策集과 小型印刷物을 製作·配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一部 選擧運動方法을 新設 또는 補完하였음.

셋째, 選擧의 墮落과 過熱을 防止하기 위하여 寄附行爲의 制限을 強化하고 演說會의 回數를 縮小하였음.

넷째, 選擧公營制 擴大를 위하여 放送演說의 國庫負擔回數를 늘리고 候補者負擔을 줄이는 몇가지 事項에 合意하였음.

다섯째, 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中止·警告·是正 및 告發權과 代執行權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監視·團束機能을 발휘하도록 하였음.

여섯째, 選擧訴訟의 處理期間을 短縮하고 罰則과 刑量을 調整하는 등 國會議員選擧法과의 均衡을 맞추기 위한 制度整備 및 補完을 하였음.

◎合意된 事項의 具體的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음.

가. 公明選擧保障裝置의 強化

(1) 不在者投票制度의 改善策으로서, 不在者申告人의 對象을 擴大하고, 原則的으로 不在者申告人은 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에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의 管理와 政黨推薦參觀人의 參觀下에 投票를 행한 후 이를 郵遞局長에게 引繼하여 郵便發送하도록 하였으며, 不在者投票期間(10日)중 特別한 事由로 계속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 없는 不在者申告人은 所屬機關·施設의 長이 區·市·郡 選擧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機關·施設內에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에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의 管理와 政黨推薦參觀人의 參觀下에 投票가 행해지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擧動이 不可能한 者나 隔·奧地 등에서 勤務하는 軍人 등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居所에서 記票하도록 함으로써 不在者投票의 公正性을 提高하였음. 그리고 郵送중의 事故를 방지하기 위하여 回送用外封套의 封緘部分에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가 確認印을 捺印하거나 居所投票人이 署名 도는 私印을 捺印하도록 하였음.

(2) 選擧人名簿作成時에 各 候補者側에서 1人씩 選任한 立會人이 立會하도록 하였음.

(3) 公共施設을 演說會場으로 利用하고자 할 경우 그 管理者는 모든 候補者에게 均等하게 利用할 機會를 부여하도록 規定하였음.

(4) 開票參觀人이 投票所에서 送付된 投票函의 引受引繼節次를 參觀할 수 있도록 明文化하였음.

(5) 開票는 區·市·郡 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이 投票區單位로 投票區別 集計表에 의하여 행하되, 출석한 區·市·郡 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發表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投票區別 集計表에 署名·捺印하도록 하였음.

(6) 開票參觀人은 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이 지정하는 開票所 또는 열람석내의 場所에 電話·콤퓨터 기타 通信施設을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選擧運動方法의 擴大

(1) 各 候補者는 政見·政策集을 16切이내·70面 이내의 規格으로 1種을 世帶數의 10分의 1에 상당하는 部數까지 發行·配付할 수 있도록 新設하였음.

(2) 小型印刷物을 16切이내·20面이내의 3種과 8切이내·2面의 1種을 各各 世帶數에 상당하는 部數까지 製作·配付할 수 있도록 新設하였으며, 특히 이중 8切이내·2面規格의 1種은 不在者申告人에게 不在者投票用紙를 發送할 때 함께 同封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에 宣傳懸板과 弘報用揭示板을 設置할 수 있도록 新設하였음.

(4) 候補者와 選擧運動員은 冠婚喪祭儀式이 거행되는 場所나 道路·市場 등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에서 支持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 選擧運動의 機會를 擴大하였음.

(5) 政見·政策에 관한 新聞廣告의 利用回數를 現行 各 日刊新聞別 3回에서 4回로 擴大하였음.

(6) 放送施設을 移用한 對談·討論時間을 現行 40分이내에서 2時間 이내로 擴大하였음.

(7) 演說會場에서는 停止된 自動車위에서의 演說, 錄音器·錄畵器利用, 連呼行爲·로고송·애드벌룬(1個) 許容 및 標札·어깨띠·手旗 휴대가 가능하도록 그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였음.

나. 選擧의 墮落·過熱現象 防止

(1) 選擧運動期間을 현행 30日에서 28日로 2日 短縮하였음.

(2) 演說會의 回數를 現行規定上으로는 候補者演說會는 市·道別 3回이내, 演說員演說會는 邑·面·洞마다 1回

이내로 總 3,662回까지 開催할 수 있었던 것을 候補者演說會와 演說員演說會를 합하여 開票區마다 5回이내로 總 1,540回까지 開催할 수 있도록 縮小하였으며, 演說會主催者는 秩序維持人을 申告하도록 하여 演說會場의 秩序를 維持하도록 하였음.

(3) 懸垂幕의 設置枚數를 현행 "區·市에서는 開票區마다 20枚이내, 郡에 있어서는 邑·面마다 3枚이내"에서 "區·市에 있어서는 管轄洞數이내, 郡에 있어서는 邑마다 2枚이내, 面마다 1枚이내"로 縮小하였음.

(4) 寄附行爲制限規定을 強化하여, 寄附行爲制限의 主體와 客體를 擴大하고, 政黨과 候補者의 경우는 選擧運動期間중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不問하고 일체의 寄附行爲를 禁止하도록 하였으며, 制限되는 寄附行爲의 類型에 入黨願書와 交換한 金品제공, 演說會 參席條件의 金品제공, 觀光便宜의 제공, 花環·달력제공, 宗敎·社會團體 등에의 金品제공 등의 行爲를 추가하였음.

(5) 演說會場이외에서의 錄音器·錄畫器를 이용한 選擧運動과 電報·書信등을 이용한 選擧運動을 禁止하도록 하였음.

(6) 選擧運動員에게 手當을 주지 않고 實費補償만 支給하도록 하였음.

(7) 寄附行爲 또는 買收 및 利害誘導行爲를 勸誘·要求·斡旋한 者(세칭 選擧몰이꾼)에 대하여 5年이하의 懲役·禁錮나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하는 加重處罰規定을 둠.

(8) 選擧와 關聯하여 부정한 金品을 받은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處罰을 免除하도록 하여 陰性的인 金品授受行爲를 豫防하는 效果를 거두고자 하였음.

(9) 演說會場에서 위험한 物件을 던지거나 候補者를 暴行하는 行爲者에 대하여 主謀者는 5年이상, 指揮統率者는 3年이상, 부화뇌동자는 3年이하의 有期懲役이나 禁錮에 처하도록 하는 規定을 둠.

(10) 演說會場에서 조명용이 아닌 횃불사용을 금지하였음.

라. 選擧公營制의 擴大

(1)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중 國庫負擔回數를 TV와 라디오 각각 현행 "候補者演說 1回, 演說員演說 1回"에서 "候補者演說 3回, 演說員演說 2回"로 擴大함.

(2) 候補者가 推薦한 投·開票參觀人의 手當을 候補者負擔에서 國庫負擔으로 변경하였음.

(3) 選擧人名簿寫本交付費用과 違法宣傳物 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을 候補者가 直接 負擔하지 않고 寄託金에서 控除하도록 하되, 寄託金을 현행 "政黨推薦候補者 5千萬원, 無所屬候補者 1億원"을 差等없이 각 "3億원"으로 引上하였음.

마.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強化

(1) 選擧管理委員會는 違法宣傳物을 發見하였을 때에 中止·撤去·收去·閉鎖등을 命令할 수 있고, 이에 不應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도록 함.

(2) 選擧管理委員會는 虛僞事實公表罪 또는 姓名등 虛僞表示罪에 해당하는 違法宣傳物이 郵送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郵遞局長에게 郵送中止를 要請하여 그 郵便物의 郵送을 中止시킬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選擧管理委員會는 調査依賴 또는 告發하도록 하여 捜査機關이 刑事訴訟法 第207條에 規定된 時間내에 押收令狀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郵送中止를 解除하도록 하였음.

바. 기타 國會議員選擧法과 均衡을 맞추는 등의 制度改善

(1) 選擧權과 被選擧權의 缺格事由중 選擧犯의 罰金刑量을 현행 5萬원에서 100萬원으로 引上함.

(2) 選擧人名簿漏落者 救濟制度를 新設함.

(3) 選擧人名簿寫本交付時期를 名簿確定이전인 名簿作成후 즉시 交付하도록

하였음.

(4) 輿論調査 및 그 結果公表를 許容하되, 選擧期間중에는 輿論調査의 結果公表를 禁止하도록 하였음.

(5) 投·開票事務從事員의 資格에 私立學校敎員을 추가하고, 開票事務從事員에는 銀行職員도 委囑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6) 盲人을 위한 投票의 便宜를 위하여 特殊投票用紙나 投票補助紙를 製作·使用할 수 있게 하였음.

(7) 記票用具의 "○"標안에 "ㅅ"字를 넣어(즉 "㋭"標) 投票用紙를 접었을 때 생기는 記票의 轉寫與否識別을 용이하게 하였음.

(8) 選擧犯의 訴訟時效期間을 選擧日후 3月에서 6月로(다만, 犯人逃避時는 1年에서 3年으로) 延長하였음.

(9) 選擧事犯의 裁判期間을 第1審은 6月이내, 第2審 및 第3審은 각각 前審宣告후 3月이내에 하도록 規定하여 1年이내에 裁判이 終結되도록 하였음.

(10) 選擧訴訟의 處理期間을 現行 1年이내에서 180日이내로 短縮하였음.

(11) 選擧事犯의 刑量중 罰金額數를 規定하는 基準을 현행 "징역1年當 50萬원"에서 "100萬원"으로 上向調整하였음.

(12) 各種制限規定違反罪의 罰金 및 過怠料 額數를 각각 현행 "10萬원이하"에서 "100萬원이하"로 引上하였음.

(13) 選擧에 관한 申告·申請·提出·報告 등을 土曜日·公休日에도 平日의 公務員定規勤務時間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하였음.

(14) 현재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委任하고 있는 사항중 選擧管理委員會所管事務에 해당하는 것 8가지 사항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음(演說會開催申告에 관한 사항, 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討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新聞廣告의 規格에 관한 사항 등)

2. 未合意事項

大統領選擧法改正에 관하여 提示된 사항중 意見의 不一致로 未合意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選擧權者의 年齡引下問題

(2) 選擧運動方法의 包括的 制限規定을 削除하는 問題

(3) 統·里·班長과 鄕土豫備軍小隊長級 이상 幹部가 選擧運動員이 될 경우 그 解任時期와 復職制限에 관한 問題

(4) 政見·政策에 관한 放送廣告制度의 新設問題

(5) 公務員의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의 제한을 擴大·強化하는 問題

(6) 統·里·班長과 鄕土豫備軍小隊長級 이상 幹部 및 公共團體의 任·職員이 그 職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한 경우 加重處罰하는 問題

(7) 投票用紙에 加印하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選定方法問題

(8) 不在者投票函의 開票方法에 있어서 一般投票函과 混合開票할 것인지 分離開票할 것인지 여부의 問題

(9) 選擧犯에 대한 裁定申請節次 導入與否에 관한 問題

Ⅲ. 選擧管理委員會法 改正審議內容

1. 合意事項

(1) 各級 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事務 등에 관하여 關係 行政機關에만 必要한 指示 및 事務協助를 要請할 수 있던 것을 公共團體 및 金融機關까지 그 對象을 擴大하되, 事務協助要請에 있어 人員·裝備 등이 必要한 경우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에 대하여는 필요한 協助要求를,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開票事務從事員 위촉에 관한 協助要求를 할 수 있도록 區分하여 協助機能을 強化하였음.

(2)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은 選擧法違反行爲를 發見하였을 때에 中止·警告·是正命令을 할 수 있고, 同命令을 不履行하는 경우에는 搜査依賴나 告發할 수 있도록 함.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의 制定·改正등이 必

要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國會에 그 意見을 提出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處의 補助機關 중 公報官을 廢止하고 대신 弘報局을 設置하여 弘報·啓導機能을 強化하고, 企劃管理官의 職名을 企劃調整室로 改稱하며, 同事務處에 選擧硏修院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두는 事務課를 事務局 또는 事務課로 하는 등 一部 補助機構의 職制를 調整하였음.

(5)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 그 事務處所屬 公務員을 직접 採用·充員할 수 있도록 하되, 試驗의 一部 또는 全部를 總務處長官에게 委任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未合意事項

(1)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에게 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하여 現場出入·質問·確認·調査와 證據物의 任意提出을 받을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는 規定의 新設問題

(2) 選擧管理委員會에 派遣 또는 委囑되어 勤務하는 他機關 所屬 公務員이 法令違反行爲를 하거나 勤務를 태만히 한 경우 그 所屬 機關의 長에게 懲戒를 要求할 수 있도록 規定을 新設하는 問題

(3) 選擧管理委員會 所屬 公務員에 대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手當을 支給할 수 있도록 規定하는 問題등에 대하여는 未合意됨.

別添 : 1. 大統領選擧法改正 合意事項
2. 大統領選擧法改正 未合意事項
3. 選擧管理委員會法改正 合意事項 및 未合意事項

1. 大統領選擧法 改正合意事項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1. 選擧一般			
가. 法令委任體系의 定立	○選擧管理委員會 所管事務중 一部를 大統領令에 委任	○選擧管理委員會 所管事務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에 委任	○委任事務의 所管 明確化
(26조7항)	기탁금의 반환방법	○현행 "大統領令"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을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	
(26조8항)	후보자의 등록신청서등 서식과 기탁금에 관한 사항		
(44조5항)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에 필요한 사항		
(47조3항)	연설회 개최신고		
(47조4항)	동일장소에 2이상의 연설회 신고시 순위조정 방법		
(50조3항)	연설회장에서의 기호표·표지판의 규격등		
(101조2항)	투표용지가인시간		
(46조3항)	신문광고규격		
나. 選擧權과 被選擧權 缺格事由중 選擧犯의 罰金刑量 上向調整 (§11, §12)	○5萬원	○100萬원	○國會議員選擧法(§11, §12)과 均衡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다. 選擧期間의 短縮 (§93①)	○30日(公告日　除外)	○28日(公告日　除外)	○選擧費用의　節減, 社會雰圍氣의　正常化
2. 選擧人名簿			
가. 名簿作成(§17①)			
○期　間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以內	○選擧日公告日부터　5日以內	○國會議員選擧法(§18①과) 均衡
○方　法	○手作業	○電算方法으로 作成할 수 있는 根據 마련	○國會議員選擧法(§18⑨)과 均衡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제9항 ⑨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 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性別 및 生年月日의 기재는 住民登錄番號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나. 不在者申告對象者 등 調整 (§17②·③)			
○申告節次 改善	(新　設)	○不在者申告事由 第2號·第3號·第5號 該當者는 所屬機關·施設의 長의 確認書를 不在者申告事由·住所·居所·姓名·性別·生年月日·職業 등을 不在者申告書에 記載하되, 居所에서 投票하고자 하는 申告者는 居所投票事由를 明示(確認書는 申告書式에 印刷)	○虛僞의 不在者申告 防止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接　受	○適法한 不在者申告는 選擧人名簿 備考欄에 "不在者"라 明記	○不在者 申告書를 接受한 때에는 同 申告書·確認書를 點檢하고, 不在者投票 對象者인지 與否를 確認하여 不在者申告人名簿를 作成하되, 同 名簿에 不在者投票 事由를 記載하여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를 할 者인지 居所地에서 投票를 할 者인지를 表示	
○對　象			
·第1號	○選擧人名簿에 登載된 投票區밖에 長期旅行하는 者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고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귀환할 수 없는 자.	
·第2號	○軍　人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	○國會議員選擧法(§18②)과 均衡
·第4號	(新　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확인절차를 거친 자	
·第5號	(新　設)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기타 選擧日에 選擧事務에 從事하는 者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者	○國會議員選擧法(§18②)과 均衡
○申告期間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以內	○選擧日公告日부터 5日以內	
다. 名簿의 分綴	○2千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選擧人名簿를 2개로 分綴	○1千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1千人을 單位로 分綴	○國會議員選擧法(§18⑧)과 均衡
다. 名簿作成 監督強化(§18)			
○立會人	(新　設)	○名簿作成過程에 候補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이 選任한 立會人(邑·面·洞單位로 候補者別1人)의 立會 許容	○選擧人名簿作成에 대한 信賴性 提高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監督權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國會議員選擧法(§19)과 均衡
마. 名簿漏落者 구제	(新　設)		
○申請者		○當該 選擧權者 또는 名簿作成權者	○國會議員選擧法(§23의 2)과 均衡
○期　間		○異議申請期間經過後 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까지	
○事　由		○名簿作成權者의 錯誤등의 事由로 인하여 正當한 選擧權者가 漏落된 경우	
○申請方法·節次 등		○作成權者나 本人이 소명자료를 添附하여 書面으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登載申請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審議結果 理由있다고 確定되는 경우에는 作成權者에게 通知하여 選擧人名簿를 修正하게 하고 申請人에게 通知	
바. 名簿閱覽期間 등의 短縮			
○閱覽期間(§19①)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의 다음날로부터 5日間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의 다음날부터 3日間	○國會議員選擧法(§20①, §24)과 均衡
사. 名簿寫本 交付期間등 調整(§25)	○選擧人名簿確定日前 7日까지 申請하고 選擧人名簿確定後 交付하되, 寫本費用은 申請者가 부담	○選擧人名簿作成마감일까지 申請하고 選擧人名簿作成後 交付하되, 寫本費用은 寄託金에서 공제	○國會議員選擧法(§26)과 均衡
3. 候補者登錄			
가. 登錄期間 및 追加登錄期間 短縮			
○登錄期間(§26①)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以內	○選擧日公告日로부터 5日以內	○國會議員選擧法(§27①)과 均衡
나. 無所屬候補者의 推薦狀받는 始期 制限(§26①)	○選擧日公告日부터	(削　除)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다. 檢印推薦狀 使用 義務化	(新　設)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檢印推薦狀 使用 義務化 ○未檢印推薦狀 使用 및 過多 推薦받는 行爲 禁止	○國會議員選擧法(§27③)과 均衡 ○選擧權者 推薦받는 것을 빙자한 事前選擧運動 規制
라. 寄託金制度의 調整(§26①·⑥·⑦)			
○寄託金額	○1億원. 다만, 政黨推薦候補者는 5千萬원	○3億원	○'89.9.8 憲法裁判所 決定事項 反映, 費用確保, 公營制 擴大 考慮
○寄託金의 用途	(新　設)	○名簿寫本交付費用·違法宣傳物 등에 대한 代執行費用	
○寄託金의 返還	○候補者가 辭退·登錄無效·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미만 得票時 國庫歸屬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 포함) 寫本交付費用과 違法宣傳物에 대한 代執行費用을 控除한 후 當選·死亡·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以上 得票時 返還하고 그외에는 國庫歸屬	
마. 登錄無效事由의 調整(§28①)		○"公務員등 立候補(§30①) 制限職에 있는 者" 追加	○國會議員選擧法(§31①)과 均衡
바. 公務員등 立候補制限의 緩和(§30①)			
○制限職 調整·追加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會議員選擧法(§32①)과 均衡
·緩和	○產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의 任·職員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山林組合·葉煙草生產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의 中央會長 및 聯合會長 및 상근임·직원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사. 候補者의 辭退申告方法(§31)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	○本人이 직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出席하여 書面申告	○國會議員選擧法(§36)과 均衡
4. 選擧運動			
가. 選擧運動의 限界明確化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하는 行爲(§33②)	○選擧에 관한 단순한 意見의 개진·意思表示와 立候補 準備行爲	○선거에 관한 단순한 意見의 개진,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준비행위와 정당의 통상적 활동	
나.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의 범위확대등			
(1) 選擧事務員등의 名稱 變更(§36)	○選擧事務員 ○選擧連絡所責任者 ○選擧事務所의 責任者	○選擧運動員 ○選擧連絡所長 (削　除)	○國會議員選擧法(§41)과 均衡 및 社會一般에 익숙한 名稱使用
(2)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의 資格制限緩和(§, 36, §38②, §40④)	○政黨·候補者 및 候補者와 同一한 政黨에 所屬하는 選擧事務長·演說員·選擧連絡所責任者·選擧事務員이 아니면 選擧運動을 할 수 없음.	〈국회의원선거법 제41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 내용으로 합의하되 일부 수정〉 ①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選擧運動員이 아닌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配偶者, 候補者 및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議員의 選擧權이 없는 者 및 第3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이나 演說員이 될 수 없다. 다만,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國會議員의 補佐官·祕書官·秘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3) 選擧運動員의 制限(§40, §92)			
○補　　償	○日當 및 實費補償	○選擧運動員에게 實費補償만 許容함.	
(4) 選擧運動關係者의 報告·通知 規定(§40⑥)	○選擧運動關係者의 變動狀況을 上級·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報告·通知	(削　除)	○國會議員選擧法(§45)과 均衡
(5) 選擧運動員의 身分證明書 佩用(§40⑦)	○選擧運動關係者의 身分證明書 携帶	○選擧運動員에게 身分證明書 交付 및 佩用 義務化	○國會議員選擧法(§45⑤)과 均衡
다. 選擧運動方法			
(1) 放送施設을 利用한 연설(§43)			
○發表內容	○政見 또는 所屬政黨의 政綱·政策·選擧綱領등	○候補者의 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事項 ○총 회수는 현행과 같음	
○方　　法	○候補者와 演說員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을 각 5回(再放送 포함)이내, 每回 20分이내	○國庫負擔에 의한 候補者 연설：候補者는 國·公營 放送施設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別로 各 3回(再放送 포함)이내, 每回 20分이내 利用 연설원 연설은 各 2回이내에서 국고부담	
	○候補者와 演說員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 利用費用중 各 1回의 費用은 國庫負擔	○候補者 負擔 放送施設利用 연설：國·公營 또는 民營放送施設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別로 候補者 各 2回이내, 演說員 各 3回이내에서 每回 20分이내 利用 ※단, 7% 미만득표자는 寄託金에서 공제하되, 부족분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徵收한다.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其　他	(新　設)	○有線放送의 中繼放送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後 연설을 中繼放送 ·有線放送社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正하여야 함.	
(2) 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討論(§44)	○第44條【放送施設을이용한對談·討論】 ①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은 放送施設을 이용하여 對談 또는 討論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對談·討論"이라 함은 2人 이상의 候補者나 2人이상의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第1項의 對談 또는 討論은 放送施設을 경영하는 者가 主管하여 행하되, 對談 또는 討論을 하고자 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와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하며, 그 時間은 每回 40分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의 "매회 40분"을 "매회 2시간"으로 개정	
	④候補者와 演說員이 각각 對談 또는 討論에 참가할 수 있는 회수는 텔레비젼 및 라디오 放送施設에 各 3回 이내로 한다.		
	⑤第3項의 對談 또는 討論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4조제5항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개정	
	⑥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 또는 討論의 費用은 이를 主管한 放送施設을 경영하는 者가 부담한다. ⑦第43條第2項後段의 規定은 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 또는 討論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⑧放送施設을 경영하는 者는 對談 또는 討論의 日時·參加者·방법 등이 決定된 때에는 放送·放映日 前 3日까지 이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新　設)	○제43조 규정중 이용회수 계산방법 및 유선방송중계에관한규정 준용 규정 신설	
(3) 政見·政策新聞廣告 回數 (§46)	○各 日刊新聞에 3回이내	○選擧運動期間중에 政治, 經濟, 社會·文化, 外交·國防 其他의 國政分野에 관한 政見·政策을 總4回이내에서 各 日刊新聞에 廣告	
(4) 演說會 (§47, §48)			
○種類 및 回數	○候補者演說會 市·道別로 3回이내, 演說員演說會는 邑·面·洞마다 1回이내 *第14代 國會議員選擧基準：(15個 市·道×3回)+(3,617개 邑·面·洞×1回)=3,662回	○候補者演說會와 演說員演說會를 합하여 開票區마다 5回이내에서 開催할 수 있도록 함.(總 1,540回)	
○秩序維持人 指定	(新　設)	○연설회 主催者는 開催申告時 秩序維持人을 申告하여 연설회場의 秩序維持	
○告知壁報 枚數	○演說會 1回에 100枚(候補者演說會는 開票區마다 100枚)이내	○연설회 1회에 200枚이내, 종료 즉시 주최자가 철거	
○公共施設管理者의 義務	○다른 目的에 우선하여 使用許可	○다른 目的에 우선하여 使用許可 및 모든 候補者에게 均等하게 利用할 機會賦與	
○其 他	(新　設)	○演說會場에서는 停止된 自動車위에서 演說을 하거나 연호행위, 로고송, 錄音器, 錄畫器 利用 및 選擧運動員의 宣傳物 着用·携帶 許容, 애드벌룬 1개 許容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방송	○후보자가 제공하는 차량 2대로 선관위 직원이 고지	○(현행과 같음)	
	○고지방송시간은 구·시는 1시간, 군은 3시간이내 (令48)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지방송시간을 법정화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5) 個別面接 (§63)	(新　設)	○公開된　場所에서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呼訴　許容	○國會議員選擧法 (§70)과　均衡
(6) 政見·政策集 發行·配付	(新　設)		
○主管者		○候補者	
○揭載事項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事項	
○規格　및　枚數		○19cm×27cm(16절),　70面이내(表紙　包含)	
○種　類		○候補者當　1種	
○配付部數		○世帶數의　10分의　1에 상당하는　部數以內	
○配付方法		○選擧運動期間中에　配付할 수　있으며, 配付前에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納本하되, 戶別訪問에　의한　配付는　禁止함.	
(7) 記號票등의 配布(§50)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가　演說會場에서　記號票　配付　또는　標識板 携帶	(削　除)	○小型印刷物　新設로　代替
(8) 小型印刷物	(新　設)		
○主管者		○候補者	
○種類·規格　및 枚數		○3種：19cm×27cm이내(16절), 20면이내 ○1種：38cm×27cm　또는 19cm×54cm이내(8절) 2면	
○揭載事項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事項	
○數　量		○種別로　세대수에　상당하는　範圍內	
○配付方法		○戶別訪問에　의한　配付, 新聞挿入에　의한　配付와 貼付·撒布行爲는　禁止 (다만,　戶別投入은　許容)	
○製作根據등　表示		○小型印刷物에는　製作根據·印刷所名·發行者　名義 表記　義務化	
○規制條項　設置		○種數　및　數量制限違反, 發行者　및　印刷所名　表示　違反　處罰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9) 宣傳物　利用擴大			
○宣傳懸板(§37②)	(新　設)	○揭載內容：候補者의　記號·寫眞·選擧口號등 ○設置場所·方法：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建物屋上　또는　外壁面에　設置·揭示 ○規格　및　數量등　필요한　사항：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함.	
○弘報用揭示板(§37②)	(新　設)	○揭載內容：候補者의　政見·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事項을　게재한　宣傳物 ○規格　및　數量등　필요한　事項：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함. ○設置場所：選擧事務所·選擧連絡所의　入口　또는　10m　거리안의　場所	
○選擧運動用　自動車등의　宣傳物　裝飾(§53④)	(新　設)	○選擧運動用　自動車·船舶에　候補者의　記號·寫眞·姓名·所屬政黨名만을　揭載한　宣傳物　附着　許容,　선전벽보·소형인쇄물　부착　허용	
○附着物의　着用·携帶(§40, §50②)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가　候補者의　記號·姓名·政黨名　또는　寫眞을　揭載한　標識板을　演說會場所에서　携帶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합의)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가　候補者의　記號·姓名·政黨名　또는　寫眞을　게재한　標識板·어깨띠·수기·표찰을　演說會場에서　휴대	
(10) 懸垂幕(§51)	○區·市：開票區마다　20枚이내 郡：邑·面마다　3枚이내	○區·市에　있어서는　地域區의　管轄洞數에　상당하는　枚數이내,　郡은　邑마다　2枚,　面마다　1枚	
사. 制限·禁止規定의　調整			
(1) 類似機關設置禁止(§39)			
○要　件	○候補者를　위하여	○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위하여	○國會議員選擧法(§44)과　均衡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禁止對象　追加		○休憩所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	
(2) 議政活動報告行爲의 制限	(新　設)		
○對　象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의 歸鄕報告會 開催, 議政報告書 配付	
○期　間		○선거운동기간중 제한	
(3)無所屬候補者의 政黨標榜禁止	(新　設)	○無所屬候補者의 特定 政黨所屬 標榜禁止	○國會議員選擧法(§59)과 均衡
(4) 錄音器등의 使用禁止	(新　設)	○연설회장 이외에서의 錄音器·錄畵器·비디오 機器 및 오디오機器를 利用한 選擧運動禁止	○第35條 削除에 따른 補完, 放任時 統制不能, 機會均等 侵害
(5) 街頭放送의 禁止	(新　設)	○演說會의 告知放送이외에 選擧運動을 위한 街頭放送 禁止	○第35條 削除에 따른 補完(국선법 79조에 규정)
(6) 有線放送의 禁止	(新　設)	○누구든지 法定이외의 方法으로 有線放送(構內放送 包含)을 利用한 選擧運動 禁止	○第35條 削除에 따른 補完(국선법에 규정없음)
(7) 電報등의 使用禁止	(新　設)	○電信·電報·書信 등에 의한 選擧運動 禁止	○第35條 削除에 따른 補完
(8) 脫法方法에 의한 著述등의 禁止(§52)	○選擧運動期間중 政黨·候補者를 支持·反對하는 선전행위를 法定이외의 方法으로 할 수 없음. 다만, 選擧運動期間전에는 예외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政黨·候補者를 支持·推薦·反對하는 內容이 一部라도 包含된 著述·演藝·映畵·廣告·寫眞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法定이외의 방법으로 配付·上演·揭示할 수 없음.	○現行 第52條第1項은 現行 第34條 및 第35條와 關聯하여 해석상 불분명하고 第35條를 削除하는 경우에도 第52條第1項이 존속하는 한 選擧期間중에는 第35條와 같은 效果가 있으므로 調整이 不可避함.
(9) 他演說會의 禁止	(新　設)	○누구든지 選擧期間중에 法定演說會이외에 選擧에 影響을 미치게 할 目的으로 多數人을 집합하게 하여 演說會開催 禁止	○第35條 削除에 따른 補完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10) 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 禁止	(新　設)	○演說會場에서 暴行·脅拍 기타 어떠한 方法으로도 政見發表會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妨害하는 행위와 횃불사용의 禁止(단, 조명용횃불은 제외)	○第35條 削除에 따른 補完
(11) 行列등의 禁止(§67)	○選擧運動을 위하여 隊伍를 組織하여 街路行進 또는 連呼行爲 禁止	○條題目 "騷亂行爲의 禁止"를 "行列등의 禁止"로 함. ○다만, 演說會場 안에서 連呼行爲 許容	
(12) 施設物設置등의 禁止(§73)			
○禁止行爲의 要件 ○禁止行爲	○選擧運動을 위하여 ○…標札 등을 設置·揭示하거나 着用할 수 없다.	○選擧에 影響을 미치게 하기 爲하여 ○…花環 기타의 施設 또는 物件을 設置·진열·게시하거나 標札등 着用物의 着用 또는 油印物을 製作·配布할 수 없다.	○國會議員選擧法(§61)과 均衡
(13) 輿論調査의 結果 公表禁止(§65)	○人氣投票·模擬投票 禁止	○輿論調査(人氣投票와 模擬投票 包含)는 許容하되, 누구든지 選擧期間中에는 調査經緯와 그 結果의 公表 一切 禁止. 候補者 또는 候補者를 推薦한 政黨 名義로 행하는 輿論調査는 禁止 ○投票用紙와 類似한 模型에 의한 投票方法으로 輿論調査 禁止	
(14) 飮食物提供禁止(§66)	○選擧運動을 爲한 飮食物提供 禁止	(削　除)	○第70條에 統合
(15) 寄附行爲의 制限(§70)			
○制限期間의 始期	○任期滿了日前 180日(再選擧·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境遇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	○任期滿了日前 180日(再選擧·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의 境遇에는 그 事由確定日, 選擧를 延期한 境遇에는 그 延期決定日)	○國會議員選擧法(§82)과 均衡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制限主體	○政黨·候補者	○政黨(創黨準備委員會 包含)·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包含)	
○制限客體	○選擧人 또는 家族	○選擧人 또는 그 家族 및 그들의 모임이나 行事	
○制限要件	○制限主體의 當該 選擧에 關한 寄附行爲 禁止	○政黨과 候補者의 경우에는 選擧運動期間前에 當該 選擧에 관한 寄附行爲만 禁止하되,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一切의 寄附行爲 禁止 ○기타의 制限主體(候補者의 家族·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또는 候補者와 관계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가 후보자나 정당명의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選擧에 관한 寄附行爲만 禁止	
○構成要件	○候補者가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方法	○政黨 또는 候補者가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方法	
○制限되는 寄附行爲 追加		○飮食物 提供 ○入黨願書와 交換하여 金品을 주거나 入黨願書를 받아주는 者에게 代價를 支給하거나 기타 利益의 提供을 約束하는 行爲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여 觀光의 便宜를 提供하는 行爲 ○花環·달력提供 ○연설회·政黨集會에 參席을 條件으로 金品(交通便宜 提供 包含)을 주거나 同 集會에 聽衆을 動員해 주는 者에게 代價를 支拂하거나 기타 利益의 提供을 約束하는 行爲 ○選擧運動員에게 法定實費補償이외에 代價를 支給하는 行爲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選擧運動員이외의 者에게 代價를 支給하는 行爲 ○宗敎·社會團體등에 金品 기타의 利益을 提供하는 行爲	
○制限되는 寄附行爲의 例外	○候補者登錄時까지의 儀禮的 또는 職務上의 行爲	○(국회의원선거법 제82조 제4항의 문안대로 합의)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政黨, 후보자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가 행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冠婚喪祭의 儀式이 거행되는 場所를 방문하여 儀禮的인 범위안에서 祝儀金 또는 弔意金을 제공하는 행위 2. 選擧事務所·選擧連絡所 또는 政黨의 당사를 방문하는 者나 國會議員選擧法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員의 職務上 行爲로서의 歸鄕報告會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政黨活動으로서의 團合大會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茶菓나 飮料(酒類를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3. 政黨의 創黨大會·改編大會 및 選擧日公告日전에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는 黨員研修敎育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위안에서 食事나 飮料(酒類를 제외한다) 또는 敎材(膳物이나 記念品을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4. 奬學財團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奬學金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奬學金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 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上의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⑯ 交通施設 편의제공의 禁止(§77)	○選擧運動目的으로 選擧人에게 交通便宜提供 禁止	(削　除)	○第70條에 統合
⑰ 選擧日後 答禮禁止(§78)			
○禁止內容	○祝賀·慰勞 기타의 饗應	○祝賀·慰勞의 饗應 기타의 利益	
5. 選擧費用			
다. 選擧運動關係者에 對한 實費補償(§87, §92)	○日當과 實費補償	○選擧運動員에 대한 實費補償만 認定 ○選擧運動員의 實費補償額을 法定金額을 超過한 金額을 요구하거나 支給하거나 超過한 金額을 支給받는 行爲 禁止	○選擧運動關係者의 自願奉仕者化 및 選擧費用의 節減 圖謀
6. 投　票			
가. 投票方法			
*기표방법 개선(§110)	○투표용지에 "0"표를 함	○전산시 식별용이를 위하여 "0"표를 "㉥"표로 함	○第121條도 수반개정 필요
나. 投票所 設置區域(§95)	○投票區內 設置	○當該 投票區안에 適正場所가 없는 경우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決定으로 隣接 投票區區域안에 설치 許容	○國會議員選擧法(§101)과 均衡
다. 投票事務從事員의 資格(§95)	○當該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 또는 敎育公務員	○當該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이나 敎員	○國會議員選擧法(§101)과 均衡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라. 투표용지의 봉함 및 보관방법 개선(§107②)	○투표용지의 봉함 및 보관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의 봉함 및 보관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마.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私印 捺印 (§101)	○그때마다 교부	○투표개시후 100枚 이내에서 미리 捺印 交付	○國會議員選擧法(§107②) 과 均衡
바. 맹인을 위한 투표용지 제작	(신 설)	○맹인용특수표지, 투표보조지제작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설치	
사. 不在者投票用紙의 發送·投票(§101)			
(1) 發　送			
○發送時期	○選擧日前 16日 上午 9時부터 2日안에	○選擧日前 15日 上午 9時부터 2日안에	
○發送方法·內容	○無料登記郵便	○登記郵便에 의하되, 候補者가 8절이내, 2면의 小型印刷物 1種을 選擧日前 15日 上午 9時까지 提出한 때에는 同小型印刷物과 選擧啓導文의 同封 許容(不在者投票의 發送과 回送의 登記郵便料는 國庫負擔)	
(2) 投　票	○居所投票. 다만, 100人 이상 所屬機關·施設의 所屬員은 不在者投票用記票所에서 投票	○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에서의 投票 ·不在者投票 期間 및 時間：選擧日前 13日부터 選擧日前 4일까지 上午 9時부터 下午 5時까지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事務所 所在地에 設置하고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 分布를 고려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도 設置할 수 있도록 하되 不在者投票所에는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記票所, 投票函, 選擧管理委員·參觀人의 座席 등 投票管理에 必要한 施設을 하여야 하며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當該 委員會 揭示板 및 管內 投票區마다 5枚의 不在者投票所 設置公告를 하고 候補者의 選擧連絡所長에게 通知 ·不在者 投票管理委員會 및 參觀人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不在者投票所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投票區의 不在者投票所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指定하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管理 －候補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은 不在者投票所마다 2人의 參觀人을 選定·申告할 수 있도록 하고 候補者가 選定한 參觀人이 없거나 한 候補者의 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가 4人에 달할때까지 選定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할 不在者申告人의 範圍：모든 不在者申告人 ·不在者投票의 進行 －不在者投票人은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委員앞에서 不在者投票封套·住民登錄證등 本人을 確認할 수 있는 證明書에 의하여 本人與否를 確認받은 후 記票所에 들어가 投票用紙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에 記票後 同 投票紙를 內封套에 넣어 封緘하고 다시 同 內封套를 回送用 外封套에 넣어 封緘한 후 委員 앞에서 同외봉투의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確認印(고무스탬프)"을 捺印받아 同 回送用外封套를 投票函에 投入후 退所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의 不在者投票마감(下午 5時) 또는 上午 12時와 下午 5時의 1日 2回에 걸쳐서 投票函을 開函하여 投票者數를 計算하고 "確認印"이 漏落된 것은 補完하여 郵遞局長에게 引繼하여 登記郵便(國庫負擔)으로 發送 ○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에서의 投票 ·設置對象：選擧管理委員會 不在者投票所의 投票期間(10日)중 繼續하여 法令 기타 特別한 事由로 選擧管理委員會의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 없는 不在者申告人이 所屬한 機關 또는 施設 ·投票管理節次 －위 機關·施設의 長은 選擧管理委員會의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 없는 不在者申告人數·그 事由·機關 또는 施設의 所在地 등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 機關 또는 施設안의 不在者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投票所 設置를 許可받도록 함.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當該 機關·施設의 長과 協議하여 不在者投票日時를 決定하고 當該 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에서 機關·施設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을 選定(政黨推薦委員 2인이상을 포함하되, 政黨推薦委員이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하여 機關·施設의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委員會를 構成하고 候補者側이 申告한 參觀人과 함께 機關·施設의 不在者投票所에 出張하여 管理 －機關·施設에서의 投票進行은 選擧管理委員會의 不在者投票所에서의 投票進行節次에 準함. ○居所에서의 不在者投票 ·身體障碍·傷病 기타 事由로 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 없는 者로서 不在者申告時 居所投票를 할 것으로 申告한 者는 居所地에서 不在者投票를 하되, 回送用外封套에 居所 및 姓名을 記載·捺印한 후 登記郵便으로 發送 ·不在者申告事由 第2號의 군인중 위 "가"에 의한 不在者投票所나, 위 "나"에 의한 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에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갈 수 없는 隔奧地 또는 艦上등의 勤務者로서 居所投票를 하는 者(軍人)는 回送用外封套에 居所投票事由를 기재하고 본인이 기명·날인한 후 登記郵便으로 發送(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회송용외 봉투의 봉함부분 상·중·하 3곳에 함)	
(3) 接　受	(新　設)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推薦委員 參與下에 不在者投票의 本人與否 및 不在者投票 管理委員會의 確認印 또는 居所投票者의 경우 本人捺印의 여부를 확인하여 不在者投票函에 投入	
아. 投票參觀人(§106)			
○充　員	(新　設)	○候補者가 選定한 者가 없거나 候補者가 選定한 投票參觀人이 8人에 未達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8人에 달할 때까지 自體 選定	○投票參觀制度의 實效性 確保
○투·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실비 보상	○후보자 부담(§79①5호)	○투·개표참관인의 수당을 국고부담으로 함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자. 投票所 出入者 記章(§107)			
○使用者의 義務 등	(新　設)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 禁止 ○記章이외에 選擧와 關聯한 어떠한 表示物도 附着禁止	○國會議員選擧法(§113)과 均衡
차. 投票所의 秩序維持(§108, §110)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援助要求主體	○委員會의 決議에 의한 委員長	○委員長이나 委員 또는 職員	投票所 秩序紊亂 事態 發生時 즉각 對處
○援助要求客體	○정복을 한 警察公務員	○정복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	
○援助義務	(新 設)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官署長 등에게 즉시 이에 應할 義務賦與	
카. 公開投票禁止 (§111)	(新 設)	○記票한 投票紙의 公開禁止 및 公開된 投票紙의 無效處理	○國會議員選擧法 (§117)과 均衡
타. 投票關係書類의 引繼 (§115)			
○條題目	○投票關係書類의 引繼와 보관	○投票關係書類의 引繼	○國會議員選擧法 (§121)과 均衡
○投票關係書類의 保管期間	○當選人의 任期중	(削 除)	
7. 開 票			
가. 開票義務從事員(§116)	○當該 區域안의 關係行政機關이나 法院의 公務員 또는 敎育公務員	○當該 區域을 管轄하는 關係行政機關이나 法院의 公務員 또는 敎員	○國會議員選擧法 (§122⑤) 과 均衡
	(新 設)	○개표종사원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직원을 추가	
다. 開票結果의 報道時期	(新 設)	○누구든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소정의 節次를 거쳐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候補者別 得票數를 發表하기 前에는 報道禁止	○國會議員選擧法 (§125)과 均衡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 강화 (§124②)	○개표참관인은 투표함도착시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得票數 發表前 檢閱節次 強化 (§118④)	○투표구단위로 행하는 후보자별득표수의 발표에 있어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구단위로 투표구별 집계표에 의하여 행하되, 출석한 구·시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투표구별집계표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라. 開票參觀人 (§119)			
○充　員	(新　設)	○候補者가 選定한 參觀人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選定한 參觀人만 있는 때에는 12人에 달할 때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自體 選定	○開票參觀制度의 實效性 確保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을 전화등 이용, 외부에 통보하는 규정문제(§119⑥)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촬영 가능	○개표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개표소 또는 열람석내의 장소에서 전화·컴퓨터 기타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마. 開票所 秩序維持(§120)			
○援助要求主體	○委員會의 決議에 의한 委員長	○委員長이나 委員	○國會議員選擧法(§123)과 均衡
○援助要求客體	○정복을 한 警察公務員	○정복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	
○援助義務	(新　設)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官署長 등에게 즉시 이에 응할 義務賦與	
사. 不在者投票의 有·無效事由 補完(§121)			
○無　效	○郵便投票의 경우 封緘되지 아니한 것	○不在者投票의 경우 內封套 또는 外封套가 封緘되지 아니한 것	○國會議員選擧法(§127)과 均衡
	○郵便投票의 경우 本人인지 與否가 確認되지 아니한 것	○不在者投票의 경우 외봉투의 봉함부분에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의 확인인이 누락되거나 거소 투표의 경우 본인의 날인이 누락 된 것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新　設)	○不在者投票所에서 하는 不在者投票의 경우 記票用具 이외의 用具에 의하여 記票할 것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이외에 기표를 한 것	○無效事由가 되는 란외 기표를 명백히 함.
아. 選擧管理書類의 保存期間 短縮(§125)	○當選人의 任期중 保管	○當選人의 任期중 保管하되 選擧에 관한 訴訟이 없거나 끝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保存期間 단축	○國會議員選擧法(§131)과 均衡
8. 當選人과 再選擧			
라. 一部再選擧, 再投票(§132, §133)			
○選擧日公告	○選擧日前 12日	○選擧日前 15日까지	○國會議員選擧法(§140, §141)과 均衡
○合黨된 政黨의 候補者 推薦期限	○公告日로부터 5日以內	○公告日부터 3日以內	
9. 公明選擧 保障裝置의 強化			
다. 選擧管理委員會의 監視·團束機能 強化			
(2) 代執行規定의 明確化 및 不法行爲에 대한 卽時強制權 明示	(新　設)		
○方　法		○國會議員選擧法 第194條의 文案대로 合意	(국선법) 第194條(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宣傳壁報·小型印刷物·懸垂幕·類似機關과 施設등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을 발견한 때에는 그 貼付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閉鎖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다.
○費用負擔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요구권	(신　설)	○寄託金에서 控除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법 제159조(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제161조의2(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중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우체국장이 우송중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때에는 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가 우송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수영장을 받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우체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 宣言 (1) 公正報道義務	(新　設)	○放送·新聞·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經營·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가 選擧에 관하여 報道·論評을 하는 때에는 表現의 自由를 남용하여 選擧의 公正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公正報道義務가 있음을 宣言的으로 規定.	○言論媒體가 國民의 輿論形成에 미치는 影響은 至大하므로 言論機關은 社會的 公器로써 公正性과 中立性을 維持·遵守할 義務가 있음.
	○放送施設의 經營者등의 選擧運動目的의 選擧에 關한 虛僞事實 報道, 事實의 歪曲報道·論評禁止(§57)	○(현행과 같음)	
바. 選擧法 違反行爲 處罰 強化 (1) 公訴時效期間 調整(§170)	○選擧日後 3月(犯人逃避時는 1年)	○選擧日後 6月(犯人逃避時는 3年)	○國會議員選擧法(§189)과 均衡, 選擧犯이 不合理하게 免責되는 것 防止
(2) 選擧犯의 裁判期間 短期化	(新　設)	○選擧犯에 대한 裁判期間을 第1審은 公訴提起日부터 6月이내, 第2審 및 第3審은 前審判決의 宣告가 있는 날부터 各各 3月이내	○國會議員選擧法(§190 의 2)과 均衡, 選擧犯에 대한 迅速한 司法處理로 選擧犯罪 抑制效果 거양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10. 選擧에 關한 訴訟			
가. 訴訟의 處理期間 短縮(§137)	○1年以內	○180日以內	○國會議員選擧法(§148)과 均衡
나. 印紙貼付額	(新　設)	○民事訴訟등印紙法에 規定된 金額의 10倍	○國會議員選擧法(§150)과 均衡
11. 罰　則			
가. 刑量의 上向調整			
○基　準	○1年當 罰金 50萬원	○1年當 罰金 100萬원	○國會議員選擧法 罰則과 均衡
○各種制限違反罪(§166)	○罰金 및 過怠料 各 10萬원이하	○罰金 및 過怠料 各 100萬원 이하	○被選擧權 缺格事由와 均衡
가. 詐僞方法에 의한 選擧人名簿作成 防止(§140)			
○構成要件	○選擧人名簿	○選擧人名簿와 郵便投票人名簿	○詐僞의 郵便投票申告 防止·處罰
다. 選擧몰이꾼 罰則強化(§141 내지 §144)	○寄附를 勸誘·要求·斡旋한 者와 寄附받는 者의 刑量 同一	○寄附行爲 또는 買收 및 利害誘導行爲를 勸誘·要求·斡旋한 者(세칭 選擧몰이꾼)의 處罰은 國會議員選擧法 第152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155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와 均衡을 맞추되, 다만, 선거몰이꾼은 국회의원선거법(4년)보다 형량이 1년 높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함.	○選擧몰이꾼의 加重處罰
라. 金品받은 者의 自首減免制導入	(新　設)	○法 第141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第142條(多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第144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第146條(買收와 利害誘導罪로 인한	○國會議員選擧法(§183의 2)과 均衡, 陰性的인 金品授受行爲 豫防效果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利得의 沒收), 第164條(寄附行爲의 禁止·制限 등의 違反罪)第1項과 關聯하여 金品 기타 利益 등을 受領하거나 受領하기로 약속을 받은 者(候補者와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有給選擧運動員·參觀人·政黨의 幹部 및 詐僞의 方法으로 利益 등을 受領하기로 한 者는 除外)가 自首한 때에는 處罰免除	
마. 業務上 威力에 의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補完(§147)		○選擧의 自由妨害罪(第147條)의 構成要件에 "業務·雇傭 기타의 關係로 인하여 自己의 保護·指揮·監督下에 있는 者에게 特定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推薦하거나 反對하도록 強要하여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者" 追加 ○연설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하는 행위자중 주모자는 5년이상의, 다른 사람을 지휘·솔선하는 자는 3년이상의, 부화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함.	
바. 投票 公開行爲등 處罰(§152①)		○投票·開票의 干涉罪(第152條第1項)의 構成要件에 "投票를 妨害하기 爲하여 住民登錄證을 맡기게 하거나 이를 引受한 者"와 "投票所에서 投票를 公開한 者"追加	○國會議員選擧法(§165)과 均衡, 投票自由侵害 防止
사. 黑色宣傳 規制強化(§159)			
○客　體	○他　人	○自己 또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물론 자기에 대한 虛僞事實 公表防止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公表對象	○所屬·思想·身分·職業 또는 經歷등	○소속·사상·행위·신분·직업 또는 경력등 모든 사항	
아. 姓名등의 虛僞表示行爲 處罰	(新　設)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反하는 姓名·名稱 또는 身分의 表示를 하여 郵便·電報·電話 등에 의한 通信을 한 者 處罰	○國會議員選擧法(§177)과 均衡
차. 事前選擧運動등 不正運動罪와 各種制限規定 違反罪 規定의 調整(§162, §163)			
(1) 事前選擧運動등 不正運動罪의 整備			
○"選擧運動을 爲하여…를 할 수 없다"는 禁止·制限 規定	○…의 規定을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162①Ⅰ)	○…의 規定을 違反한 者 *關聯規定 §162①Ⅰ 및 §34, §35, §36①, §49, §56, §60, §63, §64, §66, §67, §73, §74 등	○該當 法條의 違反이 곧 不正選擧運動이 되기 때문임.
○"選擧에 關하여…" 또는 "選擧에 影響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禁止·制限規定		○該當 法條의 違反만으로도 處罰할 것은 "…의 規定에 違反한 者"로 하여 各種制限規定違反罪(§163)에 規定 ○該當 法條를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경우에만 處罰할 것은 "…의 規定을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로 하여 不正運動罪(§162)로 處罰 *關聯規定 §162①Ⅱ 및 §39, §62, §68 등	
(2) 各種制限規定 違反罪의 整備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法定選擧運動方法의 違反	○不正運動罪(§162)로 處罰	○"…規定에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로 하여 各種制限規定違反罪로 處罰(§163①Ⅰ)	
○選擧의 公正性·選擧運動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選擧에 關하여 …할 수 없다" 또는 "選擧에 影響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없다"라는 禁止·制限規定 違反"	○不正運動罪(§162)로 處罰	○"…規定을 違反한 者"로 함. *關聯規定 §163①Ⅰ 및 §4, §36②·③, §37, §38, §40②·④·⑤·⑦, §47③·⑤내지 ⑦·⑩, §50, §52, §53① 내지 ⑥, §61, §65 등	
○投·開票秩序 등 選擧秩序確立을 維持하기 위한 制限規定 違反		○"…規定을 違反한 者"로 함. *關聯規定 §163①Ⅲ 및 §100⑥, §106⑤, §107①, §108①, §110③, §120① 등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委員·職員이 選擧秩序를 위하여 關聯規定에 依據 發한 指示·命令에 不應한 者		○"…規定에 의한 …命令에 不應한 者"로 함. *關聯規定 §163①Ⅳ 및 §108③, §110①, §120④ 등	
카. 過怠料 徵收節次의 明示(§166②)	○申告義務를 해태한 자	○申告義務를 해태한 者로 하여 當該 選擧管理委員會가 過怠料에 처하도록 하고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移牒하여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	
12. 補　則			
○選擧에 관한 申告등 時間(§172)	○一般職國家公務員의 正規勤務時間중	○公休日에 불구하고 一般職國家公務員의 平日의 正規勤務時間중	○國會議員選擧法(§193)과 均衡

2. 大統領選擧法改正未合意事項

〈未合意事項 總括〉

연번	사 항	현 행	민 자	민 주	국 민	비고(선관위의견)
1	선거권자의 연령인하 문제(§8)	20세	현행유지	18세	인하	
2	선거운동방법의 포괄적 제한 규정 삭제 여부(§35)	법정선거운동방법이외 불가	현행유지	삭제	삭제	삭제
3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운동원이 되는 경우 그 해임시기와 복직제한 문제(§36③)	①선거일공고일 이전에 해임해야 선거운동 가능	①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해임 ②복직제한 반대	①임기만료일전 120일까지 해임(가족승계불가) ②2년간 복직제한	①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해임(가족승계불가) ②2년간 복직제한	①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해임 ②1년간 복직제한
4	정견·정책의 방송광고제도 신설문제	－	신설반대	신설찬성 ※종류구별 없이 TV(30초내)·라디오(20초내) 각 1일 1회	신설찬성 ※3종을 종별로 TV(30초내)·라디오(20초내) 각 1일 2회	제도신설 ※3종을 종별로 TV(30초내)·라디오(20초내) 각 1일 2회
5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62)	①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②정상적 업무이외의 출장제한	①지방공사의 임·직원 추가 ②선거운동기획 및 그 기획의 실시에의 관여, 지지도 조사 금지를 추가	①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지방공사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 추가 ②선거운동기획 및 그 기획의 실시에의 관여, 지지도 조사, 특정정당업적홍보, 법정 이외의 금품제공, 기공식거행, 휴가중 타기관방문 금지를 추가	좌 동	①지방공사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 추가 ②선거운동기획 및 그 기획의 실시에의 관여, 지지도 조사, 보호·감독하에 있는자에 대한 선거운동 행위등 금지를 추가
6	통·리·반장과 공공단체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때의 가중처벌문제	①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때 가중처벌 ②벌금형 있음.	현행유지	①공무원외에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을 추가 ②벌금형을 없앰	좌 동	－

연번	사 항	현 행	민 자	민 주	국 민	비고(선관위의견)
7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정방법문제(§101②)	제1당과 제2당의 추천위원 2인이 가인	현행유지	현행규정에 제1당 또는 제2당 추천위원이 없을 때에 제3당 추천위원이 가인에 참여토록 보완, 3개당 추천위원 모두 가인	제3당 추천위원까지 3인 모두 가인하도록 함.	추첨으로 2인 선정
8	우편투표함의 개표방법 (§117③, §118③)	일반투표함과 혼합개표	현행유지	일반투표함과 분리개표(국회의원선거법과 균형)	현행유지	－
9	선거범에 대한 재정신청절차도입문제	－	신설반대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이 고발한 선거범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부제기시에 법원에 재정신청가능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부제기시에 법원에 재정신청가능	선관위 위원 또는 직원이 고발한 선거범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부제기시에 법원에 재정신청가능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1. 선거권 연령 (§8)	제8조(선거권) 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 민자 : 현행유지 민주 : 18세로 인하 국민 : 인하	
2. 包括的 制限規定(§35)	○選擧運動은 이 法에 規定된 이외의 方法으로 이를 할 수 없음.	(削 除) ※ 민자 : 반대(현행유지) 민주·국민 : 찬성(삭제)	○禁止·制限할 事項은 個別的으로 明文規定을 두도록 함.
3. 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등 選擧運動規制(§36③)	○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및 里·洞·統·班의 長은 選擧日公告日以前에 그 職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면 選擧事務員 등이 될 수 없음	○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및 統·里·班의 長은 選擧日公告日前 10日까지 그 職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면 選擧運動員이 될 수 없음. ○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및 統·里·班의 長이 選擧運動을 위하여 그 職에서 解任된 때에는 當該 選擧日부터 1年이내에는 그 職에 復職할 수 없음 ※ 민자 : ①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해임 ②는 반대 민주 : ①은 임기만료일전 120일까지 해임(가죽승계 불가)	○國會議員選擧法(§41③)과 均衡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②는 2년간 복직제한 국민:①은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해임(가족승계 불가) ②는 2년간 복직제한	
4. 政見·政策의 放送廣告	(新　設)		
○廣 告 者		○候補者	
○廣告內容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事項	※ ┌민자: 제도신설에 반대 ├민주:좌의 개정의견중 回數를 縮小(종류구별없이 1日1回) └국민:좌의 개정의견과 同
○利用媒體·回數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別로 各 3種이내 *各種別로 텔레비젼은 1回 30秒이내, 라디오는 1回 20秒이내로 하여, 각 1日 2回이내 放送	
○放送期間		○選擧運動期間 중	
○廣告節次		○放送廣告를 實施하는 放送社는 放送廣告 內容 및 日時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通報	
○法的用例		○放送法 第35條(廣告放送)의 時間 및 回數制限과 韓國放送廣告公社를 통하지 아니한 廣告放送의 禁止規定의 適用排除	
○費用負擔		○候補者	
5. 公務員의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禁止 (62條,163條關聯)	(新　設) 第62條【公務員등의 出張制限】 選擧運動期間중 公務員과 政府投資機關의 任·職員은 正常的인 業務이외의 出張을 할 수 없다.	○公務員 또는 政府投資機關·地方公社 기타 公共機關의 任·職員이 그 保護·監督下에 있는 者에 대하여 敎育·指示 기타의 方法으로 選擧에서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推薦 또는 反對하게 하거나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이들에게 選擧運動을 위한 金品提供 기타 利益	○公務員의 中立性 保障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第163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에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2條 또는 第47條 第11項·第12項에 規定된 이외의 文書·圖書 기타 宣傳施設을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者 2. 第52條·第56條·第61條·第62條·第67條·第73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47條第3項·第5項 내지 第7項·第10項, 第50條, 第51條 또는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②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을 提供하거나 約束하는 행위는 加重處罰 ○公務員 또는 政府投資機關·地方公社 기타 公共機關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政黨이나 候補者에 대한 有權者의 支持度 調査, 選擧運動의 企劃에 關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대하여 指示·指導하는 行爲 禁止 ○選擧管理委員會가 公務員 등 公職者의 選擧法 違反行爲를 確認한 때에는 그 違法事實을 當該 公務員의 所屬機關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도록 하며, 通報를 받은 機關의 長은 適切한 措置를 취하도록 함. ※ ┌民自:위 둘째項만 贊成 (다만, "기타 公共團體"는 削除) └民主:國民·別途 修正案 提示(別添) ※第62條에 대한 민주·국민당 개정의견 第62條(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리·통·반의 장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 및 공공단체(법률에 의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는 단체에 한한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소속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구호시설 등에 구호금품을 주는 경우 등은 예외 3.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4.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운동기간중 정상적 업무이외의 출장 (현행법 제62조와 동일) 7. 선거운동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第163條(각종 제한규정위반죄) 第1項第2號에 의하여 처벌됨.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6. 統·里·班長, 鄕土豫備軍小隊長 이상, 公共團體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한 때의 加重處罰 여부(§162②)	①公務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한 때 加重處罰 ②罰金刑 있음	※民主·國民：다음 改正意見提示 ①公務員외에 統·里·班長과 鄕土豫備軍小隊長 이상,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의 投資機關 및 公共團體의 任·職員도 加重處罰하도록 함. ②罰金刑을 없앰.	※民自：左의 改正意見에 反對
	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 ①(생　　략)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500만원으로 인상합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2조본문에 규정한 공무원,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리·통·반의 장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7. 投票用紙(§97, §101)에 加印하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選定方法	○第1黨과 第2黨推薦, 投票區委員이 加印	○抽籤으로 選定한 2人이 投票區政黨推薦委員이 加印 ※ 民自：현행유지 民主：反對(現行을 一部 修正) ①第1黨 또는 第2黨이 推薦한 委員이 없을 때에는 第3黨이 推薦한 委員이 加印에 參與하도록 함. ②第1·2·3黨이 推薦한 3人이 加印하도록 함. 國民：第1·2·3黨이 推薦한 委員 3人이 加印하도록 함.	○國會議員選擧法(§104⑤) 과 均衡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8. 開票 順序 (특히, 郵便投票函의 開票方法)	○開票는 投票區別로 하고 檢算이 끝난후 다음의 投票函을 開函하되, 投票函은 順次的으로 開函하며 同時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2個이내	○投票는 投票區別로 하되, 投票函은 順次的으로 開函하며 同時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2個이내 ※ 民自：賛成(現行대로 郵便投票函을 一般投票函에 混合開票) 民主：修正(國選法및地方議會議員選擧法과 均衡을 맞추어 郵便投票函과 一般投票函을 分離開票 國民：現行유지	○國會議員選擧法(§125)과 均衡)
9. 選擧犯에 대한 裁定申請節次 導入	(新　設)	○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職員이 告發한 選擧犯事件에 대하여 檢事가 公訴不提時 刑事訴訟法 第260條(裁定申請)내지 第265條(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의 規定을 準用 裁定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함. ○捜査機關은 告發接受後 6月이내에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 告發人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同期間안에 通報가 없을때에는 公訴不提起決定을 한 것으로 보며, 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申請日부터 그 事件의 公訴時效가 中斷되도록 함. ※－民自：新設反對 －民主：修正案 提示 ○選擧管理委員會와 候補者나 그 所屬政黨이 告發한 選擧犯事件에 대하여…… －國民：修正案 提示 ○選擧管理委員會가 告發한 選擧犯事件에 대하여……	

3. 選擧管理委員會法改正合意事項및未合意事項

Ⅰ. 改 正 合 意 事 項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1. 選擧관련 制度改善			
▣選擧事務등에 대한 指示·協助 (§16관련)	○各級委員會는 職務遂行상의 필요에 따라 관계行政機關에 事務協助를 요청할 수 있음.	▣各級委員會는 選擧事務管理를 위하여 人員·裝備의 支援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 및 金融機關(開票事務從事員에 한함)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도록 함.	●選擧事務管理에 있어 관계行政機關은 물론 公共團體에도 필요한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도록 함.
	○동 指示나 事務協助의 요청을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함.	▣동 指示나 事務協助의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 및 公共團體 및 금융기관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함.	
▣法令에 관한 의견 표시 등 (§17관련)	(新 設)	▣中央委員會는 選擧·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의 制定·改正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書面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法執行機關의 意見反映機會 制度化 →(제17조제2항으로 함)
▣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中止·警告 등	(新 設)	▣各級委員會의 委員·職員이 職務遂行중에 各種 選擧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違反行爲가 選擧의 公正性을 顯著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 管轄捜査機關에 捜査依頼 또는 告發하도록 함.	●진행중인 選擧法違反行爲의 效率的 制止를 통한 選擧의 公正性 확보
2. 委員會 事務機構 改編			
▣區·市·郡委員會 (§15⑩ 관련)	○區·市·郡委員會에 事務課를 둠. ·課長→4~5級	▣區·市·郡委員會에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도록 함. ·局長→4級, 課長→4級~5級	●관계行政機關 및 有關團體등의 職級과 同級의 職名으로 調整하여 業務遂行의 圓滑化 도모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中央委員會 ○補助機關　職制調整 (§15⑦관련)	○公報官	▣公報官을 廢止하는 대신 弘報局을 설치하여 選擧局의 選擧啓導業務와 公報官의 現行業務를 管掌하도록 함. ・弘報局 ┌公報課 　　└選擧啓導課	●選擧啓導 機能 強化
	○企劃管理官 및에 企劃豫算擔當官과 行政管理擔當官을 둠.	▣企劃管理官을 企劃調整室로 職名을 改稱함.	●業務全般에 대한 綜合的인 調整・統制와 行政能率向上을 위한 機能強化
○附屬機關設置 (選擧管理專門敎育機關)	(新　　設)	▣中央委員會 事務處에 選擧硏修院을 둘 수 있도록 함.	●소속公務員의 選擧・政黨事務에 관한 敎育의 效率的 실시 및 選擧・政黨關係人에 대한 硏修機會 부여
3. 公務員 採用의 獨立性 확보	(新　　設) ※ 行政府의 採用人力 활용	▣委員會 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試驗은 國家公務員法을 적용하여 事務處에서 실시하되,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도록 함.	●필요한 人力의 適期 確保와 高級人力의 積極 誘致
▣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調査 등	(新　　設)	▣各級委員會의 委員・職員은 選擧法違反行爲의 豫防・團束을 위하여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人에게 質問・確認하거나 關係書類 기타 證據物을 確認・調査 또는 提出 받을 수 있도록 함. ▣各級委員會의 委員・職員은 選擧人名簿 作成 및 投・開票 事務管理 등 法定選擧事務管理에 대한 侵害行爲에 관하여 調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人에게 質問・確認하거나 事實照會・關係書類 기타 證據物을 確認・調査 또는 任意提出받을 수 있도록 함.	●選擧法違反行爲의 豫防・團束을 위한 確認・調査權 부여 ●法定選擧事務管理 侵害行爲에 대한 確認・調査權 부여 －민자：반대 －민주：찬성 －국민：찬성

要　目	現　行　制　度	改　正　意　見	備　考
▣타機關 소속公務員에 대한 懲戒要求	(新　設)	▣各級委員會에 派遣·委囑되어 勤務하거나 投·開票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國家公務員法에 規定된 懲戒事由에 해당되는 行爲를 하거나 選擧法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懲戒를 要求할 수 있도록 함.	●타 行政機關 소속公務員의 指揮·統率力 確保를 통한 選擧管理業務의 效率的 遂行 －민자：반대 －민주：찬성 －국민：찬성
▣罰則	(新　設)	▣選擧法違反行爲의 質問·檢查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不應 또는 방해한 者는 3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함.	●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監視·團束의 實效性 확보 －민자：반대 －민주：찬성 －국민：찬성
▣公務員의 處遇改善 (選擧管理手當 支給根據 마련)	(新　設)	▣委員會 소속公務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手當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함.	●選擧業務의 特殊性 및 選擧業務의 과다에 따른 적정한 報償 및 士氣振作 고려 －민자：검토 －민주：선거준비기간 및 선거기간중 지급 －국민：〃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政治資金法등改正審議班을 代表하여 丁璋鉉委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璋鉉委員 統一國民黨의 丁璋鉉입니다.

저희 政治資金法改正審議班에서 그 동안 論議해왔던 主要內容과 各黨의 主張 그리고 작은 部分이나마 合意된 內容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에 앞서서 審議經緯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政治資金法改正審議班은 92年8月18日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서 民主自由黨의 姜在涉委員 金榮珍委員 金重緯委員, 民主黨의 金德圭委員 辛基夏委員 그리고 本人등 6人으로 구성되어서 그 날부터 92年9月8日까지 總 15次에 걸친 會議에서 지난 8月12日 3黨 代表가 합의한 第3項中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規定한 選擧資金에 관한 槪念을 定立했었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關係官을 출석시켜 政治資金法등에 대해서 진지한 審議를 하였는 바 그 審議結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合意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合意事項에는 匿名寄附制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後援會의 集會에 의한 募金, 廣告에 의한 募金時에 匿名寄附가 許容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래에 말씀드리는 일정

制限과 條件下에서 匿名寄附를 가능한 것으로 合意가 되었습니다.

그 主要內容은 後援會의 集會에 의한 募金과 廣告에 의한 募金에 한해서 寄附者가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도 寄附할 수 있도록 許容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그 後援會에 그런 匿名寄附의 後援會의 納入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限度額의 범위내에서만 匿名寄附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匿名寄附를 하는 경우 寄附할 수 있는 額數의 한도를 설정해서 그 額數는 政治資金에관한法律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人이 地區黨 後援會에 寄附할 수 있는 限度額의 10分의 1 이하로 하는 것으로 合意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匿名寄附者에 대해서는 免稅惠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合意를 했습니다. 그래서 後援會에서의 廣告에 의한 募金 集에 의한 募金의 경우에는 일정 制約下에 匿名寄附가 가능하도록 合意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論議 및 未合意 事項을 간략히 報告 드리겠습니다.

우선 後援會制度 部門에 있어서 쿠폰制 導入問題를 與·野間에 심도있게 論議를 했습니다.

民主黨과 統一國民黨에서는 현행 후원회 제도가 野黨側으로서는 현실적으로 實效性이 없는 制度이기 때문에 후원회 제도를 보완하는 方案의 하나로 匿名性 쿠폰制 導入을 강력히 主張했었습니다. 匿名性쿠폰制는 일종의 政治獻金證書라 하겠습니다마는 그 槪念은 書面으로 代替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民主自由黨側에서는 쿠폰制 導入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 즉 流通秩序上의 문제나 免稅資料로서 악용될 우려 그 다음에 取扱主體의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合意는 보지 못하고 심도있게 논의에 그쳤습니다.

다음에 寄託金制度에 관하여서 民主黨과 國民黨은 현행 寄託金制度가 與黨에 일방적으로 편중되고 있어서 政治活動의 衡平性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民自黨側 委員들께서는 指定寄託金制度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政黨政治發展을 위한 본질적인 취지에 反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현행대로 存置하는 것을 주장해서 역시 合意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타 參考事項을 報告드리면 3黨 代表合意文中 第3項 즉 3黨代表가 合意한 第3項中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規定한 選擧資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審議班에서는 "選擧公告日로부터 3日 이내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公示한 候補者 1人當 사용할 수 있는 選擧費用의 限度額이다" 이렇게 定義하는 것으로 槪念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擔當局長으로부터 현행 政治資金法에 대해서 槪括的인 說明을 청취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政治資金法審議班에서 論議한 내용을 간략히 報告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政治資金法등改正審議班 審議結果報告書

1. 審議經緯

政治資金法등改正審議班은 '92年8月18日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姜在涉委員, 金榮珍委員, 金重緯委員(이상 民自黨), 金德圭委員, 辛基夏委員(이상 民主黨), 丁璋鉉委員(國民黨)等 6人으로 構成되어 同日부터 '92年9月8日까지 總 15次에 걸친 會議에서 3黨代表가 合意한 第3項中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規定한 選擧資金"에 대한 槪念을 定立하였으며,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關係官을 參席시켜 同 政治資金法등에 대하여 진지한 審議를 하였는 바 그 審議結果는 다음과 같음.

2. 合意事項

가. 匿名寄附制 許容

後援會의 集會에 의한 募金 및 廣告에 의한 募金時 匿名寄附를 許容하기로 함.

※匿名寄附許容의 主要內容

○後援會의 集會에 의한 募金과 廣告에 의한 募金時 寄附者가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寄

附할 수 있도록 許容함.

○後援會의 納入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限度額의 범위내에서 모금함.

○匿名寄附時 寄附할 수 있는 額數의 限度는 政治資金에관한法律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人이 地區黨 後援會에 寄附할 수 있는 限度額의 10분의 1 이하로 함.

○匿名寄附者는 免稅혜택 不可

3. 論議事項

가. 後援會制度

(1) 쿠폰制 導入

金德圭·辛基夏·丁璋鉉委員

현행 後援會制度는 野黨에는 현실적으로 實效性이 없는 制度이므로 後援會制度를 補完하는 方案으로 一名 匿名性 쿠폰制 導入을 주장함.

※쿠폰制 : 現行 後援會에서 募金할 수 있는 限度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政治獻金 證書와 같은 性格의 匿名쿠폰을 選擧管理委員會가 發行하여 이를 각 政黨 등에 配付하고, 각 政黨 등은 이를 後援者로부터 後援金을 받고 그 領收表示로 同 쿠폰을 交付하여 政治資金을 募金할 수 있게 하는 方案임.

이 경우 後援者는 同 쿠폰의 額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免稅를 받도록 하는 것임.

姜在涉·金榮珍·金重緯委員

쿠폰制 導入으로 派生될 수 있는 流通秩序上의 문제, 免稅資料로의 惡用憂慮, 取扱主體의 문제 등이 解消되어야 가능하므로 이에대한 檢討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나. 寄託金制度

金德圭·辛基夏·丁璋鉉委員

현행 指定寄託金制度는 與黨에 일방적으로 편중되고 있어 政治活動의 衡平性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姜在涉·金榮珍·金重緯委員

指定寄託金制度 廢止는 政黨政治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취지에 反하므로 이의 存置를 주장.

4. 其他(參考事項)

가. 3黨代表合意文中 第3項의 槪念定立

3黨代表가 合意한 第3項中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規定한 選擧資金"이라 함은 選擧公告日부터 3日이내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公示한 候補者 1人當 사용할 수 있는 選擧費用의 限度額을 말한다.

나. 報告聽取

中央選擧管理委員會 政黨局長(金圭湖)으로부터 現行 政治資金法上의 後援會制度, 寄託金制度, 補助金制度에 대한 개괄적인 說明을 聽取함.

.....

○委員長 申相式 丁時采委員 朴相千委員 丁璋鉉委員 報告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特別委員會는 지난 8月12日 與·野 3黨 代表會談의 合意에 따라 第158回 國會 第5次 本會議에서 地方自治法을 비롯한 大統領選擧法, 政治資金法 등 政治關係法改正問題를 협의·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當 特別委員會를 구성하되 그 活動期間을 定期國會 前까지로 議決하였으며, 이어 8月17日부터 본격적인 當 特別委員會의 審議에 들어가 同日 委員長 및 幹事選任을 하였으며, 全體會議 散會後 午前과 午後에 걸쳐 3黨 幹事間의 會議를 통하여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運營에 대하여 合意하였습니다.

同 特別委員會 運營 內容을 보면 特委는 3黨 代表 合意事項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法案을 成案하되, 이를 위하여 3個法등 改正審議班을 구성하고, 改正審議班 會議는 매일 午前 10時에 開議하며 特委 全體會議와 3個 審議班의 議決은 全員 合議制로 하여 3個法 改正案의 1次 時限은 8月末까지로 하는 것 등을 主要事項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特委運營을 8月18日 第2次 全體會議에서 議決하였으며, 이에 따라 3個 改正審議班은 每日 午前 10時에 開議하여 8月末까지 진지하게 審議를 하여 왔으며, 이어 8月31日 3黨 幹事會議에서는 改正審議班의 議事日程을 9月3日까지 合意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9月3日 3黨 幹事間의 合意에서 審議班의 議事日程을 9月8日까지 하기로 하고, 各 改正審議班은 그 審議經緯와 合意事

項 및 未合意事項을 기재한 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9月9日 全體會議에 報告하도록 하며, 그 報告書를 議長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各 審議班別 報告를 들었으며, 同 報告書는 3黨 幹事間의 合意에 따라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當 特委의 構成經緯와 審議活動·概要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同 特委는 8月17日부터 오늘 全體委員會 會議에 이르기까지 24日 동안 全體會議 3次, 3個法등 改正審議班 會議를 總 45次에 걸쳐 각각 審議하였습니다.

앞서 各 改正 審議班의 報告대로 合意한 事項 또는 合意하지 못한 事項등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各 改正審議班에서 論議된 사항을 報告한 것으로서 당초 特委運營의 목표인 各 法律案의 成案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當 特委의 活動時限이 定期國會直前까지인 9月13日로 되어 있으나 定期國會 直前인 10日부터 13日까지 나흘동안은 秋夕連休인 관계로 사실상 오늘로써 그 特委活動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夏節期 약 1個月동안 各 黨의 黨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참석하여 진지하게 論議하여 주신 데 대하여 委員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特委에 종사한 職員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職員 여러분이 휴가도 반납하고 열심히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當 特委에 繫留中인 政府提出의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그리고 張基旭議員外 1人이 소개하여 李漢彬외 2人이 제출한 "公明選擧 實現을 위한 大統領選擧法改正의 請願"과 강문규외 2人이 제출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選擧管理를 위한 選擧管理委員會法 改正의 請願" 2件은 審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議長에게 回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特委運營에 협조해 주신 委員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8分 散會)

○出席委員

申相式	康容植	姜在涉	
金榮珍	金重緯	李仁濟	
丁時采	崔在旭	黃潤錤	
金德圭	朴相千	邕精一	
辛基夏	丁璋鉉	趙舜衡	
洪思德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姜星達
立法審議官	宋金同
立法審議官	朴奉國
立法審議官	李昇薰
立法審議官	郭柄元
立法審議官	申世華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邕精一	金鎭榮	統一國民黨

(8月25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金鎭榮	邕精一	統一國民黨

(8月31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邕精一	金鎭榮	統一國民黨

(9月2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尹榮卓	邕精一	統一國民黨

(9月7日字)

○請願回附

大統領選擧法改正에관한請願

(8月17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 李漢彬외 2人으로부터 張基旭議員外 1人의 紹介로 提出)

要旨

1. 現行 大統領選擧法 내용은 選擧運動의 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選擧運動의 自由가 擴大되는 방향으로 同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현대 民主國家에 있어서 選擧法의 基本理念은 自由와 公正性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현행 大統領選擧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내세워 選擧運動의 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또 하나의 이념인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제는 選擧運動의 自由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轉換하여 選擧를 均衡있고 調和롭게 치러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므로 大統領選擧法의 改正方向을 아래와 같이 提示하니 同法改正에 반영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첫째, 選擧運動의 포괄적 制限規定을 폐지할 것

둘째, 選擧公營制 強化에 의한 돈 덜쓰는 選擧風土를 정립할 것

셋째, 當選無效事由를 확대하고, 選擧訴訟制度를 개선할 것

넷째,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을 확대할 것

다섯째, 軍不在者投票制度를 改善할 것

8月23日字 回附 됨.

選擧管理委員會法改正에관한請願

(8月17日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8-129 강문규외 2人으로부터 張基旭議員外 1人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公正하고 效率的인 選擧管理를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政治的 中立性과 獨立性이 強化될 수 있도록 현행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의 公正한 管理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이러한 職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中立性과 機關의 獨立性이 確保되어야 하나 현행 選擧管理委員會法上의 機關構成方式이나 機關內部人事 및 豫算實態로서는 中立性이나 獨立性 確保가 어려워 선거때마다 違法한 官權介入 是非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바, 이러한 官權介入是非를 줄이고 中立的이고 효율적인 選擧管理를 위해 中央 및 下級 選擧管理委員會 構成의 中立性과 內部人事 및 豫算의 獨立性이 強化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8月22日字 回附됨.

○其 他

地方自治法改正에관한建議

8月21日 全國 各 市·道 議會 議長協議會長으로부터 回附됨.

選擧管理委員會法改正意見

9月8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으로부터 送付됨.